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문 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40호)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관할 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체신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지방우정청장----------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수탁 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제4조(수탁 신청) ① ---------- ---------- ---------- ---------- ---------- ---------- ---------- ---------- ----------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 ---------- ---------- ---------- 관할 지방우정청장 ----------. (단서 현행과 같음)
1. ~ 2.(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 ---------- ---------- ---------- ---------- ---------- ---------- 관할 지방우정청장 ----------.
②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체신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관할 지방우정청장--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체신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 관할 지방우정청장---------.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체신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 관할 지방우정청장 ---------.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① 관할 체신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② 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체신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
제11조(시설장비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시설은 해당 위탁우체국의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시설장비기준) ① ---------- 관할 지방우정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① --- 관할 지방우정청장----------

고시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체신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 ---------- ---------- 관할 지방우정청장----------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연 락 처	(02) 2195 - 1161